

제 1009 호

1984. 3. 10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염 조 남 호
공보관 조 남 호
전화 : 725-7661-9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 72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867 호 : 서울특별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3

제 1868 호 :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 3

제 1869 호 : 새세대생필관 설치조례 4

◎ 고 시

제 117 호 :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6

제 120 호 : 응암동 576 의 12-397 의 222 간포장공사 실시계획인가 7

제 121 호 : 응암동 601 의 1-601 의 52 간 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기한연기 11

< 이 면 제 속 >

공 란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252

제 122 호 : 신불 (연천) 중학교진입로개선평사실시계획인가.....	13
제 123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변경 시행허가.....	15
제 124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고시.....	15
제 125 호 : 민영주택사업계획승인.....	16
제 126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변경.....	17
제 127 호 : 도시계획사업 (공항) 실시계획인가.....	18
제 128 호 : 주택개발사업개발전농지구역중일부시행인가.....	18

◎ 공 고

제 118 호 : 건설업 (전문공사업) 면허취소.....	19
제 119 호 : 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세입경수관공인제기공고.....	20
제 120 호 :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 및 관계도면공람.....	21
제 124 호 : 도시계획안 공고.....	23
제 125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수도) 실시계획변경공고.....	24
제 126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수도) 실시계획공람공고.....	27
제 127 호 : 도로공사 계획공고.....	28

◎ 사 령

◎ 출석통지

조 례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4. 3. 7.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 서울특별시조례제 1867 호

서울특별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중 제 1 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 4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용상 필요에 의해 인근 학군의 학교에 배정된자에 대하여는 거주지 학군의 후기(주간) 고등학교의 해당학년에 결원이 있을 경우 다른

(별표)

명 칭	위 치
종로도서관	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동산 1번지 9호
남산도서관	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동 30번지 84호
동대문도서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신설동 109번지 4호
영등포도서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동 121번지 22호
정독도서관	서울특별시종로구화동 1번지

전·편입학 지원자의 학교배정에 우선하여 다시 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 도서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4. 3. 7.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 서울특별시조례제 1868 호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 각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명 칭	위 치
어린이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사직동 1번지 48호
마포도서관	서울특별시 마포구아현동 602번지 1호
용산도서관	서울특별시 용산구후암동 30번지 90호
강남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삼성동 28번지
도봉도서관	서울특별시 도봉구미아동 127번지 5호
강서도서관	서울특별시 강서구등촌동산 25번지 19호
개포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개포동산 96-2
강동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동구길동 362번지
구로도서관	서울특별시 구로구구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14블럭 1호
고덕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동구고덕동 245번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새세대 생활관 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4. 3. 8.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서울특별시 조례 제 1869 호

새세대 생활관 설치조례

제 1 조 (목적) 학생들에게 전통예절과 기정의 중요성 및 역할을 알게 하고, 현대생활에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산하에 새세대 생활관 (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 2 조 (위치) 생활관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지동 45번지에 둔다.

제 3 조 (관 장) ① 생활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생활관 업무를 통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 4 조 (하부조직) ① 생활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관리과를 둔다.

② 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 5 조 (정원) 생활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조 (교육부) ① 교육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무실, 지도실을 두되, 실장은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② 교무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생의 차출 및 등록에 관

<p>한 사항</p> <p>2. 생활관의 교육과정 연구개발</p> <p>3. 학적 관리</p> <p>4. 평가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p> <p>5. 기록 보관 및 홍보에 관한 사항</p> <p>6. 교재개발, 제작, 관리 및 지도방법 연구개발</p> <p>③지도실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p>1. 연수생의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사항</p> <p>2. 연수생 내무생활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p> <p>3. 생활실, 식당, 피복 및 집구 관리에 관한 사항</p> <p>4. 환경미화 및 청소에 관한 사항</p> <p>5. 연수생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p> <p>제 7 조 (관리과) ①관리과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계, 경리계, 관리계를 두되, 제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p> <p>②서무계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p>1. 일반서무 및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p> <p>2. 문서수발, 통제 및 보관</p> <p>3. 민원 및 보안에 관한 사항</p> <p>4. 인사, 복무, 연금,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p> <p>5.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p>	<p>관한 사항</p> <p>6. 직원교육 (민방위포함) 에 관한 사항</p> <p>7.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③경리계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p>1.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p> <p>2. 급여 및 제저축금 관리에 관한 사항</p> <p>3. 각종 계약에 관한 사항</p> <p>4. 기타 회계업무 정산에 관한 사항</p> <p>④관리계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p>1. 청사 및 차량관리</p> <p>2. 물품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p> <p>제 8 조 (생활반) 수련생들의 지도를 위하여 생활반을 둔다. 생활반에 교사와 이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원 각 1명씩을 둔다.</p> <p>제 9 조 (자문위원) ①생활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p> <p>②자문위원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관장이 위촉한다.</p> <p>③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 10 조 (재정) 생활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서울특별시 교육비</p>
--	---

특별회계 예산과 보조금에 의한다.
제 11 조 (경비 부담) 생활관 이용자에
대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실
습에 필요한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 12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
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117 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에
따른 사업기간연장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512 호 (82. 12. 9) 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변
경시행 허가된 토지에 대하여 도

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의 2 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
획사업 기간 연장하고 이를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
에 비치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인다.

1984. 3. 5.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 강서구 내발산동 715
2.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 (학교)
및 명칭 : 화곡고등학교
3. 사업의 규모 : 건물 지하 1 층, 지
상 5 층 3,179.655㎡
4. 사업시행지 주소 : 마포구도화동 181-
58
및성명 : 학교법인홍신학원
5. 사업변경시행기간 :
(총전) '82.12.9 - '83.12.8
(변경) '82.12.9 - '84.10.30
6. 허가도서 : 별첨도면 (도면생략)
7. 토지조서 : 별첨조서 (조서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120 호

응암동 576-12-397-222 간포장공사실시계획
인 가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 호 (69.1.13) 로 도시계획 시설 (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되어 서울시 공고 제 46 호 (84.1.26) 로 사업실시계획 공람 공고된 도시계획 사업 (도로)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의 권한 위임 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인가 하였기 고시 한다.
-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 . 3 . 6

서울특별시장

다 음

- 가. 사업 시행지 : 은평구응암동 379-1 외 20 필지
-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 사업 (도로)
응암동 576-12 ~ 397-222 간 포장 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폭 6 미터
연장 200 미터. A = 12 a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은평구청장)

마. 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 :
착공일로 부터
140 일간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아. 보상계획

1) 대상물건 : 별첨 토지 및 불건물

2) 보상기준기 : 보상법시행일

3) 보상절차 :

가) 감정평가 금액으로 계약체결
요구일로부터 2월이내 협의취득

나) 협의 불응시 토지 수용법 제 25 조 2 항 및 동법 제 77 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용

4) 보상지급 방법 :

가) 토지 : 계약과 동시 보상금 전액지급
나) 건물 : 계약과 동시 70%지급
철거후 잔액 지급.

응암동 576-12 ~ 397-222 간포장 공사토지조서

소재지	분할 전 토지			분할후 (수용대상) 토지			소유자 주소 성명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지 목	면적(㎡)		
응암동	397-1	대	2,487	397-1	대	740		국세청
	-72	대	106	-72	대	1	응암동 397-72	박형운
	-73	대	102	-73	대	1	" 397-45	제병권
	-88	대	79	-88	대	2	" 397-88	박영숙
	-89	대	96	-89	대	1	" 397-89	김달석
	-155	대	30	-155	대	2		국세청
	-208	대	20	-208	대	1		서울시
	-215	대	10	-215	대	10		국세청
	-228	대	10	-228	대	10		"
	-313	대	16	-313	대	8	" 397-37	이재현
	-314	대	8	-314	대	2		국
	-315	대	9	-315	대	2	" 397-19	최득소
	-338	도	22	-338	도	22		서울시
	402-19	대	314	402-19	대	62		"
	-55	도	366	-55	도	133		재무부
	-139	대	2	-139	대	1		국
	-140	대	5	-140	대	2	강원도고성군간성읍해상리 72이	창갑
	-141	대	6	-141	대	2		국
	-142	대	7	-142	대	3		서울시
	-143	대	16	-143	대	5		"
397-229	대	13	397-229	대	5		국세청	
계	21 필	3,724			1,015			

토지소유자와토지수용법제 4 조 3 항의규 정에의한관계인의주소성명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이해관계
응암동	397-1	대	2,487	국 세 청	
"	-72	대	106	응암동 397-72 박 형 운	
"	-73	대	102	" 397-45 제 병 권	
"	-88	대	79	" 397-88 박 영 숙	
"	-89	대	96	" 397-89 김 달 석	
"	-155	대	30	국 세 청	
"	-208	대	20	서 울 시 청	
"	-215	대	10	국 세 청	
"	-228	대	10	"	
"	-313	대	16	응암동 397-37 이 제 현	
"	-314	대	8	국	
"	-315	대	9	응암동 397-19 최 득 소	
"	-338	도	22	서울특별시	
"	402-19	대	314	"	
"	-55	도	366	제 무 부	
"	-139	대	2	국	
"	-140	대	5	강원도교성군간성읍해상리 72 이 찬 갑	
"	-141	대	6	국	
"	-142	대	7	서울특별시	
"	-143	대	16	"	
"	397-229	대	13	국 세 청	
	계		3,724		

사용또는수용합토지의소재지, 지목,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비 고
응암동	397-1	대	740 m ²		
"	-72	대	1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비 고
응암동	397-73	대	1		
"	-88	대	2		
"	-89	대	1		
"	-155	대	2		
"	-208	대	1		
"	-215	대	10		
"	-228	대	10		
"	-313	대	8		
"	-314	대	2		
"	-315	대	2		
"	-338	도	22		
"	402-19	대	62		
"	-55	도	133		
"	-139	대	1		
"	-140	대	2		
"	-141	대	2		
"	-142	대	3		
"	-143	대	5		
"	397-229	대	5		
계			1,015		
건물의 소유자와토지수용법제 4 조 3 항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주소, 성명					
소재지	지 번	허가별	공부상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이해관계인의주소성명
응암동	397-37	무		응암동 397-37 이재현	
	-89	무		" 397-89 김달석	
	-99	무		" 397-99 오홍표	
	402-54	무		" 402-54 이문환	
	-63	무		" 402-63 나형운	
	-80	무		" 402-80 안석준	

사용또는수용할건물의소재지허가별수용면적,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소재지	지번	허가별	수용면적(㎡)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용암동	397-37	무	2	
"	"-89	"	10	
"	"-99	"	10	
"	403-54	"	5	
"	"-63	"	3	
"	"-80	"	12	

◎ 서울특별시고시제 121 호

용암동 601의1~601의 52 간도로개설
공사실시계획인가기한연기

1. 서울시고시제 501 호 ('83.11.14)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된 은평구 용암동 601의 1~601의 52 간 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의 권한 위임 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 계획 인가 사업 기간 연기하였 기 고시한다.

1984.3.6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자 : 은평구 용암동 601의 1~601의 52 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 사업 (도로)

용암동 601의 1~601의 52 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B = 10 m, L = 127 m, A = 10.7 a

라.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은평구청장)

마. 비용 및 준공예정일

당초 : '83.10.24-'84.2.28

변경 : '84.2.28-'84.6.30

바. 사업기간 연기사유 : 사유지 보상 관계 협의 지연

사. 설계도서 : 생략.

용암동 601-1~601-52간도로개설공사 (토지조서)

소재지	분할전토지			분할후(수용대상)토지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은평구용암동	331-21	대	235 ㎡	331-24	대	63 ㎡	용암동 331-21	유필택
"	331-5	대	170 ㎡	331-25	대	48 ㎡	" 331-5	교회문
계			405 ㎡			111 ㎡		

토지소유자와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규정에 의한관계인의주소, 성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은평구응암동	331-21	대	235 m ²	응암동 331-21 유필혜	
"	331-5	대	170 m ²	" 331-5 교회곤	
계			405 m ²		

사용또는수용할토지의소재지,지목,지적,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비고
은평구응암동	331-24	대	63 m ²	응암동 331-21 유필혜	
"	331-5	대	170 m ²	" 331-5 교회곤	
계			111 m ²		

건물의소유자와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규정에 의한관계인의주소, 성명

소재지	지번	허가별	공부상면적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은평구응암동	331-21	유	405.6 m ²	응암동 331-21 유필혜	
"	331-5	유	259.58 m ²	" 331-5 교회곤	
계			665.18 m ²		

사용또는수용할건물의소재지,허가별,수용면적,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소재지	지번	허가별	수용면적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비고
은평구응암동	331-21	유	92 m ²	응암동 331-21 유필혜	
"	331-5	유	62 m ²	" 331-5 교회곤	
계			154 m ²		

◎서울특별시고시제 122 호

신불 (연천) 중학교진입로개설
공사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제 3 호 ('69.1.18) 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지적 승인되어 서울시 공고 제 45 호 ('84.1.26) 로 사업실시계획 공람공고된 도시계획사업 (도로)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의 권한 위임 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인가 하였거 고시 한다.
2.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3.6

서울특별시장

다 음

가. 사업 시행지 : 은평구 불광 2 동
451 의 5 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신불 (연천) 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폭 6미터, 연장 110미터, $A=6.6a$ 하수도 $D=600\% \sim 900\%$ $L=110m$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마.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190 일간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아. 보상계획

1) 대상물건 : 별첨토지 및 물건조서

2) 보상의 시기 : 보상철의 완료후

3) 보상절차

가) 감정평가 금액으로 계약체결 요구일로부터 2월이내 협의 취득

나) 협의 불응시 토지수용법 제 25 조 2 항 및 동법 제 77 조의 규정에 의해수용

4) 보상지급 방법

가) 토지 : 계약과 동시 보상금 전액 지급

나) 건물 : 70%지급, 철거후잔액

신불 중학교진입로개설공사토지조서

소재지	분할 전 토지			분할후 (수용대상) 토지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m ²)	지번	지목	면적(m ²)	주소	성명
불광 2 동	451	대	50	451	대	26	불광동 456	호학성외5인
"	451-2	대	266	451-2	대	10	" 451-2	허 문
"	451-3	대	106	451-3	대	20	" 90-60	강 달 원
"	451-33	전	278	451-33	전	132	" 456	호 무 신
"	453-3	구	423	453-3	구	57		서울시
"	산 143-9	임	838	산 143-9	임	361	불광동 456	호 무 신
	계		1,961			606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불광 2 동	451	대	50	불광동 456 호학성의 5 인		
"	451-2	대	266	불광동 451-2	허 문	
"	451-3	대	106	불광동 90-60	강달원	
"	451-33	전	278	불광동 456	호무신	
"	453-3	구	423	서울특별시		
"	산 143-9	임	838	불광동 456	호무신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 고
불광 2 동	451	대	50			
"	451-2	대	266			
"	451-3	대	106			
"	451-33	전	278			
"	453-3	구	423			
"	산 143-9	임	838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소재지	지 번	허가별	공부상면적	소유자주소·성명		비 고
불광동	451-2	유	158.34 ㎡	불광동 451-2	허 문	
사용 또는 수용할 건물의 소재지, 허가별, 수용면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소재지	지 번	허가별	수용면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불광동	451-2	유	57 ㎡			

◎서울특별시고시제 123 호

도시계획사업(학교)변경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45 호(82.7.2) 및 동고시 제 197 호(83.4.8) 동고시 제 583 호(83.11.4)로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및 변경허가된 정의여자중·고등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일부 변경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동법 시행령 제 6 조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3.7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도봉구쌍문동 150-1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학교)변경시행허가 정의여자중·고등학교 교사증축

다. 사업면적 및 규모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기 존		2,912.6 m ²	12,145.6 m ²
기 허 가	21,828 m ²	647.8	5,276.3
금회추가	1,190	466.4	2,798.4
계	23,081	4,026.4	20,220.4

라. 사업시행자주소·성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쌍문동 150-1

학교법인삼산학원 이사장 윤 기 안

마. 사업준공예정일

1) 당초 : 1984. 6.30

2) 변경 : 1985. 3.30

바. 위치도 및 설계도서 : 별첨(생략)

로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디아동 52-1 번지 소재 방천시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허가를 도시계획법 제 24 조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사업시행허가하고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3.7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고시제 124 호

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허가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6 호(75.1.9)

가. 사업시행지 : 도봉구미아동 52-1번지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 (시장) 명칭 : 방천시장증축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1) 대지면적 : 5,180 2) 건축면적 : 550.05 연 면 적 : 2,810.93 철거면적 : 622.08 라. 사업시행자주소 : 도봉구미아동 52-1 을복상사(주) 마. 사업착공 및 준공예정일 1) 착공예정일 : 사업시행허가후 1개 월이내 2) 준공예정일 : 85.3.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자권리 명세 (생략)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 설명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125 호 민영주택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규정에 의 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288 번 지 2호 지상에 민영주택건설 사업제 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 의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4.3.7 서울특별시장 1. 사업당 : 민영주택사업계획 승인 2. 사업주체 : 화성주택신상철의 2인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규모 가. 위치 : 서울특별시강동구길동 288 번지 2호 나. 면적 : 3,572㎡ 다. 규모 : 연립주택 3층 4동 48세대 기타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1984.3.15 - 1984.9.5 5.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결정조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 (㎡)	연장 (㎡)	기 점	종 점	비 고
기 정	소로			6	36	길동 289-2	길동 288-2	
제 지	소로			"	"	"	"	

◎서울특별시고시 제 126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변경

- 1. 서울시고시 제 428 호 (82.10.20)로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된 단국대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허가 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3.8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용산구한남동산 8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학교)
단국대학교 시설확충

다. 사업시행 규모

1) 시행 규모 : 140,010 평방미터

2) 사업변경

가) 기존 :

건축면적 : 19,920.90 평방미터

연면적 : 70,466.62

동 수 : 20 동

나) 변경후 :

건축면적 : 24,892.08 평방미터

연면적 : 89,807.89

동 수 : 21 동

다) 변경내용 (금회허가분)

건축면적 : 4,971.18 평방미터

연면적 : 20,092.91

동 수 : 2 동 신축, 1 동 철거

(가정학관 : 연면적 751.64㎡)

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각층건축면적 및 층수

· 중앙도서관 : 지하 1 층, 지상 5 층

(건축면적 : 4,293.25 ㎡)

연면적 : 17,755. ㎡)

· 가정학관철거 (건축면적 :

263.24 ㎡ 연면적 : 751.64㎡)

· 기숙사 : 지하 1 층, 지상 3 층

(건축면적 : 67.93 ㎡)

연면적 : 2,297.41 ㎡)

· 예술관 및 과학관 연면적

정정 : 59.5 ㎡)

(예술관 5,680.10 → 5,671.30㎡)

과학관 8,614.70 → 8,654 ㎡)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산 8

학교법인 단국대학교 이사장 박정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년월일 : 허가일로부터 30 일 이내

2) 준공예정일 : 1985.12.31

바. 위치도 및 계획명면도 : 별첨
(도면생략)

사. 사용할토지 : 용산구 한남동산
8-14, 104, 105, 107, 60-20, 29

아. 토지소유자 : 학교법인 단국대학
교 (수용할 토지없음)

자. 공사실제도서 : 별첨 (도면생략)
* 기타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127 호

도시계획사업 (공항)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공항 : 김포국제공항)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도시계획사업 (공항) 실시계획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제 26 조와 같은 번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교통부 항공건설사무소 건설 1 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 3. 9.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강서구 의발산동, 공항동, 방화동, 과해동, 오쇠동, 오평동, 개화동,

부천시 공강동 일대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시설
(공항 : 김포국제공항) 확장 사업

3) 사업시행규모 : 5,140,543㎡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가. 착수년월일 : 사업실시계획 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87.12.30

5) 사업자의 성명, 주소 : 교통부
항공건설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
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
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단 관보인쇄 생략)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
리인의 주소, 성명 : 별첨
(단 관보인쇄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128 호

* 주택개량재개발전농 3 구역중일부시행
인가 *

건설부고시 제 55 호 ('81.2.20) 로
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74 호 ('82.7.20) 로 사업계획 결
정된 전농제 3 구역중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9 조, 제 12 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 58 조 규정에 의거

주택개발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하였기
아래와 같이 고시한다.

1984. 3. 9
서울특별시장

가. 인가내용

- 1) 재개발사업의 명칭 : 전농제 3 구역
중 일부 재개발사업
- 2) 시행구역 및 면적
 - 시행구역 : 동대문구 답십리동
산 1-2, 산 1-7 번지 일부
 - 면 적 : 8,671.56 평방미터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대문
구 북아현동 1-652
- 4) 시행기간 : '84.3-'85.12.31.
- 5)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652 권영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
축물의 명세 : 별첨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118 호

건설업 (전문공사업) 면허취소

건설업법을 위반한 다음업체에 대
하여 건설업법 제 38 조 제 1 항 제
15 호에 의하여 건설업 (전문공사업)
면허취소를 하였기, 이를 같은법 시
행령 제 37 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합니다.

1984. 3. 8.

서울특별시(장)

다 음

업종 및 면허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재지	사 유	취 소 일자	법 규
토공 (서울 82-10-244) 상하수도 (서울 82-13-130) 포장유지보수 (서울 82-16-17)	남양중기 (주)	장유길 이성석	영등포구 영등포동 94-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상의 전문 공사가 총합된 ○ 전문건설업체 가 전문건설업 법에 의거하 도업사상 	84.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법 제 38 조 제 1 항 제 15 호 ○ 건설업법 제 37 조 제 2 항 제 4 호

◎서울특별시공고제 119 호

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세입
징수관공인폐기공고

서울특별시 목동지구개발사업소 세입징수관 공인을 서울특별시 회계관제공무원직인규칙 제9조에 의거 폐기하고 관인규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관인규칙제 6조에 의거 공고

한다.


1984. 3. 7

서울특별시 장

1. 공 인 명
 - 가. 서울특별시 목동지구개발사업소 세입징수관인
 - 나. 서울특별시 목동지구개발사업소 수입금출납원인
2. 사용폐기일 : 1984.2.28.
3. 공인의인영 : 별첨

직 인 폐 기 신 고 서


폐기당시
인 영



회 제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		
직 명	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징수관		
사용기간	1983년	5월	27일부터
	1984년	2월	28일까지

직 인 폐 기 신 고 서

폐기당시
인 영



회 제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		
직 명	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수입금출납원		
사용기간	1983년	5월	27일부터
	1984년	2월	28일까지

◎서울특별시공고제 120 호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및관계도면공람
 같음한다.
 1984. 2. 27.
 서울특별시장
 공고및공람개요
 1. 사용개시년월일 : 별첨조서참조
 2. 배수구역 : 별첨조서
 3.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위치 : 동대문구전농 4 동 444 주변외 67 개소
 4.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합류식또는 분류식구별 : 합류식

1. 하수도법 제 6 조 (제 13 조) 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에서 설치 완료한 하수도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15 일간 일반인에게 공고및 공람한다.
 2.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통지를 생략하고 이 공고로

사 용 개 시 조 서

연번	위 치	사용개시년월일	배 수 구 역	구 분
1	전농 4 동 444 주변외 3 개소	83. 5. 4	중상 배수 구역	합류식
2	용두 1 동 26-16 외 1 개소	83. 5. 4	청계	"
3	면목동하수도복개	83. 6. 20	중랑 배수 구역	"
4	면목 4 동 392-393 간	83. 5. 24	"	"
5	목 2 동 237 주변	83. 6. 20	"	"
6	망우 3 동 454-458 간	83. 6. 20	"	"
7	면목 2 동 136 주변	83. 5. 25	"	"
8	망우 2 동 463-490 간	83. 7. 9	"	"
9	망우 2 동 465-464 간	83. 6. 24	"	"
10	면곡 5 동 171-174 간	83. 5. 26	"	"
11	망우 3 동 442-443 간	83. 6. 9	"	"
12	상봉 1 동 205 주변외 2 개소	83. 6. 20	"	"
13	답십리 동 317-309 간	83. 7. 9	"	"
14	이문 3 동 243-237 간	83. 8. 6	"	"

연번	위 치	사정개시년월일	배 수 구 역	구 분
15	취경중학교주변	'83. 6. 10	중량배수구역	합 류 식
16	변곡 1동 90-57 ~ 90-22 간	'83. 5. 30	"	"
17	이문동 69-92 외 3개소	'83. 6. 7	"	"
18	상동 2동 107 주변	'83. 6. 17	"	"
19	용우동 27번지의 1개소	'83. 6. 17	청계배수구역	"
20	동북여중진입로	'83. 7. 22	중량배수구역	"
21	취경 1동사육소주변	'83. 6. 18	"	"
22	중화 1동 131 주변	'83. 5. 18	"	"
23	제기동 1146 주변	'83. 7. 26	청계배수구역	"
24	방우동 401-470	'83. 8. 31	중량배수구역	"
25	중량배수로	'83. 10. 20	"	"
26	변곡 7동 666-668	'83. 8. 6	"	"
27	이문 1동 77-57 ~ 101-37	'83. 8. 21	"	"
28	진동 3동 46 주변	'83. 6. 27	"	"
29	변곡 6동 19-1 ~ 19-58	'83. 7. 30	"	"
30	북 1동 178-1 ~ 178-6 간	'83. 8. 3	"	"
31	방우 3동 442-34 ~ 436-25	'83. 11. 22	"	"
32	중화 1동 279-280	'83. 10. 19	"	"
33	남성리 4동 16-24 간	'83. 10. 4	"	"
34	방우 1동 182-365 간	'83. 9. 19	"	"
35	방우 2동 465-3-15 외 1개소	'83. 9. 16	"	"
36	북 2동 지대	'83. 9. 17	"	"
37	진내동 473-474 간	'83. 10. 6	"	"
38	이문 1동 258 외 3개소	'83. 10. 18	"	"
39	정향리모타리주변	'83. 8. 23	"	"
40	변곡동하수도복개 (2차)	'83. 10. 7	"	"
41	방우동 408 외 3개소	'83. 10. 10	"	"
42	용우 2동 734-763 간	'83. 10. 30	청계배수구역	"
43	안동동 183-1 ~ 363-12	'83. 10. 31	중량배수구역	"
44	방우동 182-83 간	'83. 11. 8	"	"

연번	위 치	사용개시년월일	배 수 구 역	구 분
45	망우 3 동 524 외 3 개소	'83.10.29	중량배수구역	합 류 식
46	회기동 3 번지의 3 개소	'83.11.15	.	.
47	목동 68-2 ~ 43 간	'83.11.15	.	.
48	면목 3 동 595-1 ~ 496 간	'83.11.24	.	.
49	면목 6 동 69 외 1 개소	'83.11.29	.	.
50	전농 1 동사무소 주변	'83.12. 8	.	.
51	공두동 252-129	'83.12.15	청계 배수구역	.
52	담십리 1 동 217-112 외 1 개소	'83.12. 5	중량배수구역	.
53	망우 2 동 515 주변의 2 개소	'83.11.28	.	.
54	휘경 2 동 294 주변	'83.12. 1	.	.
55	면목 7 동 667 주변	'83.12.13	.	.
56	중화동 280 외 2 개소	'83.12.12	.	.
57	신내동 101 주변	'83.11.30	.	.
58	경원선철도연변	'83.12.16	.	.
59	면목 4 동 384	'83.12.14	.	.
60	상봉 1 동 279 주변	'83.12.19	.	.
61	면목 7 동 350 주변	'83.12.13	.	.
62	담십리 2 동 2 번지 주변	'83.11.30	.	.
63	휘경동 43-7 주변	'83.12.30	.	.
64	청량리 2 동 367-455 간	'83.12.24	.	.
65	면남국교진입로	'83.12.26	.	.
66	담십리 1 동 478-476 간	'83.11.28	.	.
67	전농 4 동 558-271 간	'83.12.29	.	.
68	전농 2 동 152 주변	'83.12.27	.	.

◎서울특별시공고제 124 호
 도시계획안공고

시행령 제 14 조의 2 규정에 의거 동태문구 도시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아래장소에서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인다.

1. 도시계획법 제 16 조의 2 및 동법 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때에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공 램장소에 제출하기 바람. 가. 공람기간 (시작) 1984.3.10	(끝) 1984.3.23 1984.3.9 서울특별시장
---	---

구 분	도시계획안	위 치	규 모 (㎡)	공 램 장 소
도 시 계 획 시 설	도 시 계 획 변 경 결 정 (공용의청사)	계기동 287-33 외 1 필	330.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 도시정비과

<p>◎ 서울특별시공고제 125 호</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수도) 실시계획변경공고</p> <p>1. 서울특별시고시 제 485 호 ('83.9.19) 로 실시계획 인가된 장지동 주변정비공사 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수도)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람 공고하고,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및 동법시행령 6 조, 27 조 2 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공람공고 한다.</p> <p>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p>	<p>가. 공람장소: 강동구청 등극과 나. 공람기간: '84.3. ~ '84.3. 1984.3.10 서울특별시장</p> <p style="text-align: center;">공 램 개 요</p> <p>1. 사업명: 장지동 주변 정비공사 2. 사업시행지: 강동구 장지동 3. 사업규모: 폭 10. m 연장 274 m 하수도 D=600 mm L=225 m (변경감)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5. 사업기간: '83.9.19-'84.9.19 6. 사용할 건물및토지조서: 별첨 (변경추가) 7. 기타사항: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상기 공람장소에 제출 및 문의하기 바람.</p>
--	--

장지동 주변 정비공사

(지장물조서)

번호	구분	위 치	지장물명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자주소	이해관계인주소
1	기정	장지동 260-14	가 옥	박원중		성남시창곡동 288	
2	·	장지동 210-7	·	최상모	조동환	성내동 46-17	성북구돈암동 51-32
3	·	장지동 260-13	·	이한영		장지동 260-13	
4	·	장지동 260-14	공 장	김순분	최순용 윤동우	장지동 242	천호동 164 번지 장지동 242 번지
5	·	장지동 260-14		백충기		장지동 260	
6	변경 추가	장지동 246-1 260-4	가 옥	송상규	이원명	장지동 260-4	장지동 260-4 호

장지동 주변 정비공사 토지조서

번호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관 계 인 주 소 성 명	
1	210-2	도	493.0		국 유 지
				기 정	
2	210-7	대	364.0	성 내 동	최 상 모
				기 정	조 동 환
3	211-4	도	132		국 유 지
				기 정	
4	211-6	도	126.0		미 등 기
				기 정	
5	217-6	도	724.0		·
				기 정	
6	216-1	도	231.0		·
				기 정	
7	215-2	도	182.0		·
				기 정	
8	263-4	도	344.0	은평구역촌동 42-51	박 현 수
				기 정	

번호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관 계 인 주 소 성 명	
9	263-3	담	11,331.0	강남구학동산 70-3	이 용 복
				기 정	
10	261-4	도	347.0	장지동 195	김 준 동
				기 정	
11	260-10	도	79.0	장지동 242	우 장 성
				기 정	
12	260-3	도	308.0	장지동 242	우 장 성
				기 정	
13	260-11	도	210	장지동 242	우 장 성
				가 정	
14	257-4	담	297.0	성동구자양동 139	손 회 복
				기 정	
15	260-13	대	96	성동구하왕십리동 242-130	이 원 명
				기 정	
16	260-14	대	184	장지동 242	우 장 성
				기 정	
17	260-16	대	6	장지동 242	우 장 성
				기 정	
18	260-15	대	4	장지동 242	우 장 성
				기 정	
19	259-7	대	169	은평구역촌동 42-57	박 현 수
				기 정	
20	261-3				

◎서울특별시공고제 126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수도)
실시계획공람공고

나. 공람기간 : '84.3. .-'84.3.
1984.3.10
서울특별시

공 랑 개 요

1. 사업명 : 풍납동 영파여고 주변 도로 포장공사
2. 사업시행지
풍납동 156-13 ~ 237-3
풍납동 230-17 ~ 231-15
3. 사업규모 : B=4-10 m L= 606 m
아스콘포장 : 41 a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로부터 1년
6. 기타사항 : 의견 및 상해항 사항은 상기 공람장소에 제출 문의 바람.

1. 서울시고시 제 196 호 ('75.12.1) 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지적고시된 풍납동 영파여중고 주변 도로포장 공사의 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수도) 실시인가를 받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의 1 항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의 2 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고한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한다.

가. 공람장소 : 강동구청 토목과

토 지 조 서

연번	지 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1	풍납동 230-4	잡	145	성동구광장동 530-13	최효식	
2	" 230-23	"	20	" 중곡동 121-29	조영호	
3	" 231-35	전	564	" " 229-10	김수웅	
4	" 231-5.	도로	281	강동구성내동 177	이영환	
5	" 163-24	"	244	중구충무로 1가 22-5	한유신사	
6	" 231-18	"	83	강동구성내동 177	이영환	

연번	지 번	지 목	지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7	풍납동 163-21	대	149	중구충무로 1가 22-5	(주)유신사	
8	성내동 328-40	잡	100	강동구성내동 108-4	영파학원	
9	" 328-7	"	346	"	"	
10	풍납동 237-9	전	18	강동구천호동 142-10	이찬주	
11	" 337-3	"	239	강동구성내동 8-7	최영규	
12	" 336-3	"	17	성동구하왕십리동 1038-10	양준이 외 2인	
계			1,206			

◎서울특별시공고제 127 호

도로공사계획공고

1. 도로법 시행령 제 24 조의 3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 17 조의 2에 의

거 도로공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토목과에 비치 열람한다.

1984.3.10

서울특별시장

노선명	공사명	공사시행자	공사시행구간	시행기간
서울특별시도	풍납동영파여중고주변 도로포장공사	강동구청자	풍납동 156-3~237-3 " 230-17~237-1	84.3-8
"	풍납동 282 번지의 3 개 소 도로포장공사	"	" 282-2~282-12 " 142-88~140-22 성내동 95-28~106-3 " 84-12~84-3	"
"	원호병원주변 도로정비공사	"	둔촌동 77-3~98-68	"
"	마천동 128 주변 외 2 개소포장공사	"	마천동 128 주변	"

노선명	공사명	공사시행자	공사시행구간	시행기간
서울특별시도	양지마을 생활하수시설공사	강동구청장	암사동 396-147	84.6-12
"	명일동 대창아파트앞 하수도공사	"	명일동 342~341간	84.3-8
"	관내일원 하수도 개량공사	"	풍납동 126-150~129-25 " 137-4~130-2 " 279-10~227-2 " 222-166~222-169 " 78-3~78-38 성내동 80-12~81-21 " 145-3~23-1 암사동 421-70~421-61	83.3-9
"	천호동 472-462간 하수도개량공사	"	천호동 472~461	84.3-8
"	풍납토성주변 하수도 및 포장공사	"	풍납동 88-7~71-2	84.3-10
"	둔촌동 77번지 주변 하수도공사	"	둔촌동 77-3~77-86	84.3-8
"	거여동 132주변 하수도공사	"	거여동 132-29~128-8	84.3-7
"	성내 2동 74번지 도로 포장공사	"	성내동 71-3~79-6	84.3-8
"	천호동 75번지 주변 하수도공사	"	천호동 75번지	84.3-8
"	마천동 283번지 주변 포장공사	"	마천동 283-55~283-62	84.3-7
"	풍납동 94-4~86-16간 도로포장공사	"	풍납동 94-4~86-16	84.3-8
위와 같이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 니 본구간내 지하매설물(전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유관사업을 시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사 기 간중 시행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 령

◎ 1984 년 3 월 6 일자

령 제 85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서창곤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내 무 국 인 사 과	지방행정서기

령 제 86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이상권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전출을 명함.	용산구산업과	지방행정주사보
정기대	"	동대문구신내동	지방행정서기
진삼규	"	은평구세무1과	"

◎ 1984 년 3 월 7 일자

령 제 87 호

◎ 1984 년 3 월 8 일자

령 제 88 호

재무국 세정과
지방행정주사 김 원 재

지방공무원법 제 63 조 제 1 항 제 1
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동대문구총무과
지방행정서기보 박 경 순

내 무국 인사과 근무를 명함.

령 제 89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성운	지방전기기사보	총 무 과	지방전기기사보시보
정찬응	"	"	"
서정욱	지방토목기사보	"	지방토목기사보시보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병임	지방기계기사보	총무과	지방기계기사보시보
김성복	"	"	"
조남경	지방기계기원보	"	지방기계기원보시보
김동찬	"	"	"
김종달	"	"	"

© 1984년 3월 10일자

령제 90 호

성명	발령사항	비고
이종교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2 호봉을 급함 중구 근무를 명함.	신규
박중권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11 호봉을 급함 종합건설본부 근무를 명함.	

령제 91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부서	직위	직급		
황해룡	도봉구 보건소	8호봉소장 직무대리	지방의무 기과	신규	
서청숙	영등포구 보건소	보건지도과장	"	동대문구보건소	지방의무기과
윤혜성	종로구 보건소	"	"	도봉구보건소	"
성영자	강서구 보건소	"	"	윤경구보건소	"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부서	직위	직급		
조화숙	도봉구보건소	보건지도과장	지방의무기과	종로구보건소	지방의무기과
박노진	동대문구보건소	"	"	서대문구보건소	"
유승희	서대문구보건소	"	"	용산구보건소	"
김형숙	강남구보건소	"	"	성동구보건소	"
라문희	구로구보건소	"	"	강서구보건소	"
지우창	용산구보건소	"	"	구로구보건소	"
이용옥	성동구보건소	"	"	강남구보건소	"

령제 92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광정환	통계담당관통계조사계장	통계담당관 통계기준계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상범	통계담당관통계기준계장	행정과 종합상황실	지방행정사무관
라송주	행정과(종합상황실요원)	종로구총무과	지방행정주사

령제 93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고철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올림픽기획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유 진 선	소 속	강서구민방위과
			직 명	지방행정서기
	본 적	서울특별시용산구용산동2가 5-472		
	주 소	서울특별시마포구서교동 329-3		
출석 이유	징계심의출석진술 (징계혐의자행상불명으로 시보제재)			
출석일시	1984년 3월 28일 09시 30분			
출석장소	강서구청 기획상황실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첨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 포기서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치한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1984년 3월 10일				
강 서 구 인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유 진 선 귀 하				